

인천도시관리계획(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도시관리계획(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 560-476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6. 8. 8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

1. 결정(변경)취지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
2. 위 치 : 서구 연희동 709-1번지 일원
3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 -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(변경없음)
 - 나.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 - 다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 - 라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
○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조서

기 정					변 경				
가구 번호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비 고	가구 번호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비 고
		위치	면적(㎡)				위치	면적(㎡)	
35	4,941.4	1	1,129.7		35	4,941.4	1	1,129.7	
		2	336.0				2	336.0	
		3	219.0				3	219.0	
		4	270.4	도로2.0㎡			4	270.4	도로2.0㎡
		5	391.0				5	645.1	5, 6, 12 획지합병
		6	127.1						
		7-1	277.1				7-1	277.1	
		7-2	295.0				7-2	295.0	
		8-1	283.3				8-1	283.3	
		8-2	239.1				8-2	239.1	
		9	338.5				9	338.5	
		10-1	316.8				10-1	316.8	
		10-2	360.1				10-2	360.1	
		10-3	231.3				10-3	231.3	
		12	127.0						

○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가구번호	위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35	5, 6, 12 → 5	획지합병	소규모 획지의 합병으로 건축규모 확장

마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
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(변경) 조서 (변경 없음)

바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 없음)

4. 고시도면 : 별첨(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: 구보게재 생략)